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접근통제) 법리

- MGE UPS system v. PMI 사건

박 성 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들어가며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은 기술적보호조치를 접근통제조치(access control measures)와 이용통제조치(use or copy control measures)로 구분하여 모두 보호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용통제조치를 보호하는 것은 분명하다.[1] 그러나 접근방지조치에 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하는지는 불분명하며[2] 적어도 저작권법 문언 상으로는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접근방지조치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4]. 기술적보호조치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 권리자가 그 보호를 지렛대로 경쟁업자를 부당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 그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는데 대상 판결이 그런 법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II. MGE UPS system v. PMI 사건의 사실 관계

---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2) 위 각주1 대법원 판결이 접근방지조치의 보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박덕영, 한미 FTA 협정 저작권 분야 주요 내용과 국내 이행, 창작과권리(2007. 9.) p133 참조.

3) 정상조 편,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 p1169.

4) http://www.mcst.go.kr/web/cultureInfoCourt/fta/mctFTAData/ftaDataRoomView.jsp?pSeq=2
이 글에 있는 싸이트들은 모두 2010년 12월 20일에 방문한 것이다.

1. MGE의 기술적보호조치

MGE는 UPS[5]를 만드는 회사인데 MGE에서 만드는 UPS을 이용하려면 MG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없어도 MGE의 UPS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추가 기능들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가능했고 그 프로그램은 MGE UPS에서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dongle"이라고 부르는 외부의 하드웨어 보안키와 연결되어서 프로그램이 우선 dongle을 찾은 후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많은 해커들이 이러한 MGE의 보안 기술을 해킹했고 일단 그것이 해킹되고 나면 그 프로그램에의 접근은 쉬웠고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2. PMI의 행위와 MGE의 소 제기

PMI는 MGE의 UPS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UPS를 다루는 서비스 회사인데 2000년 6월 경 해킹된 MGE의 프로그램을 어디선가 구해서 사용했다. (MGE는 PMI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해킹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MGE는 2004년 12월 GE/PMI[6]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침해(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 부정경쟁행위(unfair competition conversion), DMCA(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 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인데 그에 관하여 GE/PMI는

---

5)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란 상용 전원에서 발생 가능한 전원 장애를 극복하여 양질의 안정된 교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고도 한다. 일반 전원 또는 예비 전원 등을 사용할 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순간 정전, 과도 전압 등으로 인한 전원 이상을 방지하고 항상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장치이다. 컴퓨터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금융, 방송, 산업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이 증가함에 따라 병렬운전 UPS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의 급진전으로 모든 시스템이 네트워크화 됨에 따라 UPS도 네트워크상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공급자인 UPS 제조업체에서도 원격으로 감시, 제어할 뿐만 아니라 원격 진단, 사후 관리를 함으로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신뢰성 제고 및 경비절감 등을 꾀하고 있다. 최종방문일 2010. 11. 15. http://100.naver.com/100.nhn?docid=719463

6) 2001년에 GE가 PMI를 인수했다.

MGE의 dongle은 MGE 프로그램의 복제를 막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프로그램에의 접근(access)을 막는 것이므로 일단 그것이 해킹되어서 누구나 접근하게 되면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을 복제할 기술적보호조치는 없는 것이라며 해킹된 MGE의 프로그램은 이미 접근이 용이한 상태(freely accessible)여서 DMCA에서 말하는 기술적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III. 법원의 판단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thern District of Texas)은 GE/PMI가 MGE의 저작권,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부정경쟁행위(unfair business practices)를 했지만 DMCA 위반(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 5 항소법원[7]은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IV. 기술적보호조치 우회(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s) 법리

제 5 항소법원은 DMCA를 제정할 때 입법자가 염두에 둔 것은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였음[8]을 밝히며 DMCA의 문언[9]에서 접근(access)의 의미가 법문상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MGE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to view, make use of the copyrighted work)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만약에 MGE가 주장하는 것처럼 DMCA 상 접근을 이해하게 되면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공정이용(fair use)마저도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에 해당하여 책임을 부담시키게 될 것인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10] Chamberlain 사건[11]과 Lexmark 사건[12]에서 제시한 기준을

---

7) MGE UPS Systems Inc. v. GE, PMI, 5th Cir. No. 08-10521, 29 Sep 2010.

8) Davidson & Assocs. v. Jugn, 422 F.3d 630, 639-40 (8th Cir. 2005)

9) 17 U.S.C. §1201(a)(1)(A) "No person shall circumvent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a work protected under this title"

10) 기술적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공정이용을 인정할 지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가 적용가능한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보호와 공공의 활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기술적보호조치에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가능하고, 법문을 볼 때 그런 해석은 어렵다는

제시하였다. 즉, DMCA에서 금지하는 접근이란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와 저작권법상 권리와의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reasonable relationship)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MGE의 dongle은 단지 MGE 프로그램에의 처음 접근을 막을 뿐이고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dongle이 우회되는 것은 DMCA에서 말하는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DMCA의 기술적보호조치 우회 조항은 이미 기술적보호조치가 무력화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13] 이 사건에서 GE/PMI가 해킹을 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DMCA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V. 정리

저작권으로 보호하려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점에서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를 판단할 때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보호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공정이용의 법리를 기술적보호조치의 경우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판결에서 제시한 기술적보호조치 보호의 기준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견해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사견에는 전자가 타당해보인다.

11) Chamberlain Group, Inc. v. Skylink Techs., Inc., 381 F.3d 1178, 1202 (Fed. Cir. 2004)

12) Lexmark Int'l, Inc. v. Static Control Components, Inc., 387 F.3d 522, 547 (6th Cir. 2004)

13) Universal City Studio, Inc. v. Corley, 273 F.3d 429 (2d Cir. 2001)